

선수위원회 운영규정

개정 2015. 2. 7.
개정 2016. 4. 16.
개정 2016. 10. 14.
개정 2020. 10. 08.

제1조 (설치근거 및 명칭) 대한장애인배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선수위원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위원회운영규정 제16조 및 협회 정관 제37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선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 <개정'20.10.8>

제2조 (목적) 위원회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,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패럴림픽 정신의 보급·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'20.09.00>

제3조 (적용범위) 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적용한다. <개정'20.10.8>

제4조 (기능)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·심의한다. <개정'20.10.8>

1. 패럴림픽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관련,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패럴림픽 정신의 보급·확산 <개정'20.09.00>
2.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선수위원회의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
3. 선수의 권익 보호,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<개정'20.10.8>
4. 선수등록 및 경기분야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<개정'20.10.8>
5. 선수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및 조정에 관한 사항
6. 은퇴선수 프로그램 개발 등 은퇴선수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<개정'20.10.8>
7. 협회 회장 선거인단 추천에 관한 사항 <개정'20.10.8>
8.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
9.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

제5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2. 부위원장 1~2인 <개정'20.10.8>
3. 위원 18인 이내 (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) <개정'20.10.8>

② 위원은 정기등록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각 협회에 등록된 선수이어야 하며, 위원 선임 년도 기준 2년 연속 선수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. <개정'20.10.8>

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회장이 협회 사무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 <개정'20.10.8>

제5조의2(위원장의 선출) <신설'20.10.8> ① 위원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며,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자 중 최다 득표자로 선출된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. <신설'20.10.8>

② 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'20.10.8>

제6조 (위원의 위촉) 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를 회장이 위촉하며, 부위원장이 2인일 경우에

는 선임 순서를 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한다. <개정'20.10.8>

② 위원은 시·도지부에서 선출된 선수위원장을 회장이 위촉한다. <개정'20.10.8>

제7조(회장 선거인 선출) <개정'20.10.8> ① 위원회는 협회 회장선거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선거인 3인을 선출하고 위원장과 함께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으로 추천해야 한다. <개정'20.10.8>

1. <삭제>
2. <삭제>

② 제1항의 선거인은 협회 회장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하며,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회장 선거권을 제한한다. <개정'20.10.8>

제8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선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9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협회 정관 제23조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의한 선거인은 임기 시작 전이라도 제7조 제2항에 의거 선출된 당선자가 된다. <개정'20.10.8>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위원으로 선임된 기간 동안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
5. 소속 시·도지부에서 직위를 잃었을 경우<개정'20.10.8>

제11조(회의소집) 위원장은 협회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 <개정'20.10.8>

제12조(의결정족수)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제척 및 회피)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 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4조 (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센터) <삭제> <삭제'20.10.8>

제15조(시·도지부 선수위원회 설치의무) <개정'20.10.8> ① 각 시·도지부는 선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'20.10.8>

② 각 시·도지부의 선수위원회운영규정은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'20.10.8>

부 칙('15. 2. 7)

제 1 조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본 규정 제9조 제1항과 관련하여 최초 적용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2017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.

부 칙('16. 04. 16)

제 1 조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최초 적용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2017년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.

부 칙('16. 10. 14)

제 1 조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(의결)을 받은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'20. 10. 8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